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1가단1472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B

원고보조참가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8. 16.

판 결 선 고 2022.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D 답 83㎡ 및 춘천시 E 답 355㎡ 중 20/355 지분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20. 9. 2. 접수 제421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는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2011. 3.

21.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보증금액 135,000,000원, 보증기한 2012. 3. 21.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F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주식회사 F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2020. 11. 18. H은행에 합계 102,899,3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A은 2018. 5. 14. 춘천시 D 답 83㎡(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E 답 355㎡ 중

20/355 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2020. 8.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춘천지방법원 등기와 2020. 9. 2. 접수 제421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A은 2021. 4. 23. 의정부지방법원 2021하단563, 2021하면56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21. 10. 7.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A의 자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만이 있었던 반면, 채무는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약 377,700,000원 상당이었다. 한편, A은 위 각

부동산을 72,912,000원에 매수하였고, 피고는 A으로부터 이를 2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은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로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서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하고, A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와 2020. 9. 2. 접수 제421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피고에 대한 50,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및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가 A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한 것일 뿐 A의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선의의 항변을 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의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상현